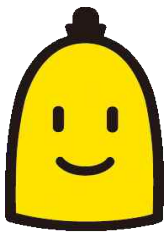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종 로 구

결산검사 의견서

종로구청장 귀하 **2017년 5월 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종로구의회로부터 종로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4월 3일부터 2017년 5월 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종로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종로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종로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안 재 홍 서명

검사위원 최 송 희 서명

검사위원 이 혜 선 서명

결산검사 의견 목록

구 분	결산검사 의견		쪽수
결산총평	1. 결산총평		1
	2. 일반회계		2
	3. 특별회계		4
	4. 재무제표		5
	5. 성과보고서		8
	6.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8
	7. 예비비지출		9
	8. 기금결산		9
	9. 채권결산		11
	10.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내역		12
세입부문	일반회계	1. 세입징수율 저조에 따른 현황 및 실태	13
		2.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 및 실태	15
		3. 세입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검토	16
	특별회계	1. 세입징수율 저조에 따른 현황 및 실태	18
		2. 결손처리액 및 이월액	19
		3. 지난연도 세입 분석	19
세출부문	1. 일반회계 세출관련 집행잔액 과다		21
	2.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23
	3. 기금의 활용방안 검토 및 권고사항		25
	4. 기타 검토의견 및 권고사항		25

Ⅰ 결 산 총 평

1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잉여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입(A)		333,400	359,061	383,650	413,230	446,086
세출(B)		244,607	276,796	291,285	309,607	337,968
잉여금 (A-B)	소 계	88,793	82,265	92,365	103,623	108,118
	이 월 금	40,371	16,953	21,045	30,033	39,814
	보조금 집행잔액	2,481	14,254	3,391	3,544	5,324
	순세계 잉여금	45,941	51,058	67,929	70,046	62,980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 계	438,088,680	446,086,425	337,967,901	108,118,524
일 반 회 계	381,558,436	388,208,761	322,390,622	65,818,139
특 별 회 계	56,530,244	57,877,664	15,577,279	42,300,385

회 계 별	차인잔액	이 월 액			
		명시	사고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108,118,524	7,673,613	32,139,544	5,324,693	62,980,674
일 반 회 계	65,818,139	7,673,613	24,487,622	5,282,448	28,374,456
특 별 회 계	42,300,385	0	7,651,922	42,245	34,606,218

Ⅱ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개요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6	381,558,436	424,971,030	388,208,761	36,762,269	1,628,145	35,134,124
2015	345,861,726	394,161,289	355,035,987	39,125,302	2,389,582	36,735,720

구 분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감액	33,024,367	1,890,313	7,121,289	1,998,366	11,757,037	5,071,220	5,186,142
2016	388,208,761	98,038,570	55,894,068	7,047,112	60,831,911	102,453,671	63,943,429
2015	355,184,394	96,148,257	48,772,779	5,048,746	49,074,874	97,382,451	58,757,287

2016년도 실제 수납액은 388,208,761천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381,558,436천원 대비 101.74%, 6,650,32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1.35%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음.

미수납액 중 결손액은 1,628,14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1,437천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체납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시효소멸(1,035,010천원) 비율이 63.5%를 차지하는바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여전히 필요해 보임.

또한 재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비율이 여전히 높으므로 자체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88,208,761	388,208,761	0

2 세 출 결 산 개 요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일반회계 총계	381,558,436	322,390,622	32,161,235	7,673,613	24,487,622	27,006,579
일반공공행정	46,433,303	33,922,106	8,990,154	1,128,728	7,861,426	3,521,043
공공질서및안전	1,099,391	1,060,563	0	0	0	38,828
교 육	5,359,465	4,966,752	0	0	0	392,713
문화 및 관광	36,411,659	25,123,900	6,681,386	1,164,000	5,517,386	4,606,373
환 경 보 호	26,385,006	23,327,948	1,922,796	0	1,922,796	1,134,262
사 회 복 지	118,838,392	104,798,164	9,726,208	4,857,515	4,868,693	4,314,020
보 건	7,334,310	6,682,083	31,218	31,218	0	621,009
농림해양수산	619,359	595,769	0	0	0	23,590
산업·중소기업	2,968,471	2,221,478	488,166	0	488,166	258,827
수 송 및 교 통	15,601,767	11,409,447	3,078,109	0	3,078,109	1,114,211
국토및지역개발	11,957,614	9,301,727	1,243,198	492,152	751,046	1,412,689
예 비 비	1,940,996	0	0	0	0	1,940,996
기 타	106,608,703	98,980,685	0	0	0	7,628,018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84.49%에 해당되는 322,390,62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43%에 해당되는 32,161,23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7건, 7,673,613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2건, 24,487,622천원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8%에 해당하는 27,006,579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282,447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명시이월의 경우 설계용역,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가회동주민센터 대수선 공사 등 13건,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서울문묘와 성균관 방염제 도포 등 4건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의 경우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2건, 공사준공일 미도래 8건, 유관기관 협의지연, 설계용역 진행 미비, 민원발생으로 인한 주민의견 수렴등의 사업절차 지연으로 22건, 보상협의 지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기타 상황 발생등으로 20건을 이월하였음.

Ⅲ 특 별 회 계

1 세 입 결 산 개 요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처 리	
					결 손 처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특 별 회 계	56,530,244	79,628,030	57,877,664	21,750,366	524,002	21,226,364
의료급여	322,450	607,246	396,586	210,660	8,086	202,574
주 차 장	56,207,794	79,020,784	57,481,078	21,539,706	515,916	21,023,790

구 분	합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증 감 액	△316,149	0	△5,218,173	0	0	△2,002,380	6,904,404
2 0 1 6	57,877,664	0	14,426,352	0	0	2,411,872	41,039,440
2 0 1 5	58,193,813	0	19,644,525	0	0	4,414,252	34,135,036

종로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2016년 실제 수납액은 57,877,664천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396,586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57,481,07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38%, 1,347,420천원이 초과 징수 되었으나,
전년대비 316,14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등의 세외수입 및 보조금 교부액 감소에 따른 사유임.
미수납액 중 결손금액을 분석한 결과 결손금액 전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으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세 출 결 산 개 요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특별회계	56,530,244	15,577,279	7,651,922	0	7,651,922	33,301,043
의료급여	322,450	292,825	0	0	0	29,625
사회복지	322,450	292,825	0	0	0	29,625
주차장	56,207,794	15,284,454	7,651,922	0	7,651,922	33,271,418
수송및교통	53,031,967	12,414,644	7,651,922	0	7,651,922	32,965,401
기타	3,175,827	2,869,810	0	0	0	306,017

2016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28%에 해당되는 15,577,27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에 해당되는 7,651,922천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0건이며, 사고이월은 5건 7,651,922천원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에 해당하는 33,301,04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2,245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고이월 내역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숭인 제4공영주차장 건설, 공공용지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유관기관 협의 지연 및 설계용역 공정 미비 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시킨 경우로 주차장 건설등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집행할 경우 보다 상세한 사업구조화를 통해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남아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고,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7,877,664	57,877,664	0

Ⅳ 재 무 제 표

1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3,131,057	20,999	3,110,058	337,022	315,502	△21,520
2015년	3,120,500	29,526	3,090,974	320,033	296,033	△24,000
증감	10,557	△8,527	19,084	16,989	19,469	△2,480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9,08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는 0.62%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총비용-총수익)은 전년대비 2,480백만원 증가하였음.

2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요약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262,040	8.37	259,281	8.31
투 자 자 산	8,972	0.29	8,977	0.29
일 반 유 형 자 산	234,711	7.50	241,311	8
주 민 편 의 시 설	511,738	16.34	501,252	16.06
사 회 기 반 시 설	2,111,153	67.42	2,107,119	67.5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443	0.08	2,560	0.08
자 산 총 계	**3,131,057**	**100.00**	**3,120,500**	**100.00**
유 동 부 채	5,710	27.19	11,856	40.16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5,289	72.81	17,670	59.84
부 채 총 계	**20,999**	**100.00**	**29,526**	**100.00**
고 정 순 자 산	2,857,759	91.89	2,849,756	92.20
특 정 순 자 산	101,278	3.26	91,263	2.95
일 반 순 자 산	151,021	4.85	149,955	4.85
순 자 산 총 계	**3,110,058**	**100.00**	**3,090,974**	**100.00**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3,131,057**	-	**3,120,500**	-

지난해에 비해 10,557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주민편의시설(10,486백만원, 2.09%)에 의한 것이며, 유동자산의 총액은 262,040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75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금융상품(73,550백만원, 73.98%)에 의한 것임.

지난해에 비해 8,527백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예수보관금(7,741백만원, 96.52% 감소)에 의한 것 이며,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15,289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38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퇴직급여충당부채(2,366백만원, 15.37%)에 의한 것임.

【요약재정운영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 사업순원가	197,858	122,808	75,050	-	75,050	170,107	116,852	53,255	-	53,255
Ⅱ. 관리운영비	-	-	113,859	(9,656)	104,203	-	-	114,032	(1,395)	112,637
Ⅲ. 비배분비용	-	-	13,441	-	13,441	-	-	13,289	-	13,289
Ⅳ. 비배분수익	-	-	16,456	-	16,456	-	-	16,780	-	16,780
Ⅴ. 재정운영순원가	-	-	185,894	(9,656)	176,238	-	-	163,796	(1,395)	162,401
Ⅵ. 일반수익	-	-	207,414	(9,656)	197,758	-	-	187,796	(1,395)	186,401
Ⅶ. 재정운영결과 (Ⅴ - Ⅵ)	-	-	(21,520)	-	(21,520)	-	-	(24,000)	-	(24,000)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종로구의 사업순원가는 75,050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104,204백만원), 비배분비용(13,441백만원) 및 비배분수익(16,456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76,238백만원임.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7,758백만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종로구)의 재정운영결과는 ∆21,520백만원임.

【요약재정운영표】-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105,523	33.44	103,333	34.91
운 영 비	81,514	25.84	68,460	23.13
정 부 간 이 전 비 용	5,953	1.89	6,182	2.09
민 간 등 이 전 비 용	105,986	33.59	101,569	34.31
기 타 비 용	16,526	5.24	16,489	5.56
비 용 총 계	**315,502**	**100.00**	**296,033**	**100.00**
자 체 조 달 수 익	168,402	49.97	167,615	52.37
정 부 간 이 전 수 익	168,279	49.93	152,384	47.62
기 타 수 익	341	0.10	34	0.01
수 익 총 계	**337,022**	**100.00**	**320,033**	**100.00**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21,520)**	-	**(24,000)**	-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105,523백만원(33.44%), 운영비 81,514백만원(25.84%), 정부간이전비용 5,953백만원(1.89%), 민간 등 이전비용 105,986백만원(33.59%), 기타비용 16,526백만원(5.2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익은 337,022백만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168,40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8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경상세외수익(7,516백만원, 18.23% 증가)에 의한 것임.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168,279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89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익(11,757백만원, 23.96% 증가)에 의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비용-수익)은 ∆21,520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48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비용 총액(19,469백만원, 6.58% 증가)의 증가가 정부간 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의 증가에 따른 수익 총액(16,989백만원, 5.31% 증가)의 증가를 초과함에 따른 것임.

V 성과보고서

(단위:개, 천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8**	**55**	**131**	**17**	**97**	**17**	337,967,902	309,607,733	28,361,169
감사담당관	1	1	5	1	4	0	198,043	231,270	△33,227
행정지원국	1	8	27	3	19	5	95,850,754	92,912,013	2,938,741
문화관광국	1	9	22	2	20	0	35,767,365	31,443,198	4,324,167
복지환경국	1	16	21	2	16	3	138,540,262	123,708,644	14,831,618
도시관리국	1	7	22	2	14	6	9,606,635	10,371,733	△766,098
안전건설교통국	1	6	18	2	15	1	32,509,181	34,449,540	△1,940,359
신청사건립추진단	0	0	0	0	0	0	8,154,600	0	8,154,600
보건소	1	7	14	5	7	2	14,112,972	13,410,207	701,765
의회사무국	1	1	2	0	2	0	3,230,090	3,080,128	149,962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전략목표(8개)-정책사업목표(55개)-단위사업(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3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편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등은 100%를 달성한 반면, 행정지원국은 19%, 도시관리국은 27%를 미달성 하였음.

VI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단위:건,천원)

구분	전용내역			이체내역		
	건수	감 액	증 액	건수	감액	증액
합 계	**17**	**30,822,268**	**30,822,268**	**4**	**17,400**	**17,400**
일반회계	16	348,729	348,729	4	17,400	17,400
특별회계	1	30,473,539	30,473,539	0	0	0
의료급여	0	0	0	0	0	0
주 차 장	1	30,473,539	30,473,539	0	0	0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통합메시징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서버 장비 구매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례 등 17건, 30,822,268천원이 전용되었으며,

2016.7.1.자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의 건강도시 사업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등 총 4건, 17,400천원이 기획예산과로 이체 사용되었음.

Ⅶ 예비비지출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0,300	26,268	26,268	0	4,032
일반회계	30,300	26,268	26,268	0	4,032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	0	0	0	0	0
주 차 장	0	0	0	0	0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71,296천원으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사업으로 30,3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6,268천원을 지출하고, 4,03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Ⅷ 기 금 결 산

1 기 금 운 용 내 역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합 계	86,697,451	10,339,470	13,810,817	3,471,347	97,036,921
신청사건립기금	75,031,113	9,172,271	9,607,551	435,280	84,203,384
중소기업육성기금	870,690	227,255	1,322,255	1,095,000	1,097,945
노인복지기금	622,825	23,026	23,026	0	645,851
자활기금	335,816	47,513	77,513	30,000	383,329
양성평등기금	411,800	7,639	7,639	0	419,439
문화지구육성기금	89,723	9,253	9,253	0	98,976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309,995	45,491	103,861	58,370	355,486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17,790	114,898	128,076	13,178	332,688
도로굴착복구기금	1,719,763	314,568	1,014,562	699,994	2,034,331
재난관리기금	4,127,444	330,749	930,849	600,100	4,458,193
식품진흥기금	1,450,888	△91,448	195,202	286,650	1,359,44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509,604	138,255	391,030	252,775	1,647,859

2 기금수입 ·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수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100,508,268	8,988,159	14,000	1,422,136	86,697,451	1,725,709	1,660,813
신청사건립기금	84,638,664	8,135,928	0	0	75,031,113	1,471,623	0
중소기업육성기금	2,192,945	0	0	1,306,380	870,690	15,875	0
노인복지기금	645,852	0	0	0	622,825	23,027	0
자활기금	413,329	0	0	0	335,816	6,688	70,825
양성평등기금	419,440	0	0	0	411,801	7,639	0
문화지구육성기금	98,976	0	0	0	89,723	9,253	0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413,856	0	0	94,375	309,995	9,486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45,865	0	0	0	217,790	7,227	120,848
도로굴착복구기금	2,734,325	0	0	0	1,719,763	41,738	972,824
재난관리기금	5,058,292	852,231	0	0	4,127,444	78,617	0
식품진흥기금	1,646,091	0	14,000	21,381	1,450,888	39,355	120,467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900,633	0	0	0	1,509,603	15,181	375,849

구 분	지출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00,508,268	2,131,202	1,221,370	118,250	97,036,921	525
신청사건립기금	84,638,664	435,280	0	0	84,203,384	0
중소기업육성기금	2,192,945	0	1,095,000	0	1,097,945	0
노인복지기금	645,852	0	0	0	645,852	0
자활기금	413,329	0	30,000	0	383,329	0
양성평등기금	419,440	0	0	0	419,440	0
문화지구육성기금	98,976	0	0	0	98,976	0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413,856	0	58,370	0	355,486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45,865	13,178	0	0	332,687	0
도로굴착복구기금	2,734,325	638,176	0	61,818	2,034,331	0
재난관리기금	5,058,292	600,100	0	0	4,458,192	0
식품진흥기금	1,646,091	214,828	38,000	33,297	1,359,441	525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900,633	229,640	0	23,135	1,647,858	0

2016년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2종이며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기금 총수입은 13,810,817천원으로 전입금 8,988,159천원, 보조금 14,000천원, 융자금 회수 1,422,136원, 이자수입 1,725,709천원, 기타 수입 1,660,813천원임.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의 총 지출은 3,471,347천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 2,131,202천원, 융자성사업비 1,221,370천원, 인력운영비118,250천원,
기타지출 525천원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잔액 10,339,470천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86,697,451천원을 합한 97,036,921천원을 익년도로 예치하였음.

Ⅸ 채 권 결 산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 재 액
		증감	발생액	소멸액	
계	9,407,084	221,409	3,093,483	2,872,074	9,628,493
일반회계	5,577,911	378,617	461,084	82,467	5,956,528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3,829,173	△157,208	2,632,399	2,789,607	3,671,965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기 금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9,602,076	26,417	5,930,310	26,218	3,671,766	199
보증금채권	소 계	459,426	0	459,426	0	0	0
	전화선예치금	9,922	0	9,922	0	0	0
	회 원 권	449,504	0	449,504	0	0	0
융자금채권	소 계	9,062,699	26,417	5,390,933	26,218	3,671,766	199
	공무원학자대여금	5,385,983	0	5,385,983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3,127,284	0	0	0	3,127,284	0
	민간학자대여금	373,652	0	0	0	373,652	0
	기 타	175,780	26,417	4,950	26,218	170,830	199
미수금채권	소 계	11,244	0	11,244	0	0	0
	재 산 매 각	11,244	0	11,244	0	0	0
기타채권	소 계	68,707	0	68,707	0	0	0
	기 타	68,707	0	68,707	0	0	0

X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1 공유재산증감내역

(단위:개,천원)

구분	전년도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액		감액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계	10,974	2,663,901,023	102	4,139,045	290	5,795,929	10,786	2,662,244,139
행정재산	10,299	2,628,650,734	84	3,524,442	248	4,681,860	10,135	2,627,493,316
공 용	1,575	80,328,946	10	1,055,439	22	1,650,841	1,563	79,733,544
공공용	8,723	2,547,821,788	74	2,469,003	226	3,031,019	8,571	2,547,259,772
기업용	1	500,000	-	-	-	-	1	500,000
일반재산	675	35,250,289	18	614,603	42	1,114,069	651	34,750,823

2016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토지 1,400,058㎡ 2,520,846,446천원, 건물 150,491㎡ 125,695,687천원, 기타 4,939건 15,702,006천원 상당이며
2016년 공유재산 증감내역은 102개, 3,151㎡, 4,139,045천원 상당 증가되었고,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290개, 4,308㎡, 5,795,929천원 감액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10,786개, 1,550,549㎡, 2,662,244,139천원의 공유재산이 보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공유재산 프로그램 도입 이전의 자료관리가 미흡하여 매년 차이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사작업 및 관리에 철저를 요함.

2 물품증감내역

(단위:개,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수량/금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수량/금액)
		계	취득	처분	
계	954	22	106	84	976
	17,924,883	△7,696,471	1,012,262	8,708,733	10,228,412

2016년도말 물품현황은 10,228,412천원이며,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1,012,262천원이 증가한 반면, 차량 등의 매각, 처분으로 8,708,733천원이 감소하였음.
물품대장 등록시 물품가액의 단위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단위 혼동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요함.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의견

Ⅰ 세 입 부 분

1 일 반 회 계

1. 세입 징수율 저조에 따른 현황 및 실태

▶ 세입결산 총괄 요약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차기이월액	징수율
자체수입	지 방 세	101,913	98,039	3,874	614	3,260	96%
	세 외 수 입	88,781	55,894	32,887	1,014	31,873	63%
	소 계	190,694	153,933	36,761	1,628	35,133	81%
이전수입	교부금,보조금	234,277	234,277	-	-	-	100%
일반회계 총계		424,971	388,210	36,761	1,628	35,133	91%

상기의 표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세입징수율(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은 평균 96%이며,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63%로서 저조한 편입니다.

종로구청내 25개 부서별로 최근 3년간의 징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이월액과 과태료 부과 부서의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징수율 저조 부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최근 3년간 징수율 (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		
						2016	2015	2014
재 무 과	6,328	4,897	1,431	68	1,363	77	79	96
세 무 1 과	133,029	110,870	22,159	829	21,330	83	84	83
세 무 2 과	5,927	2,710	3,217	611	2,606	46	43	38
주 택 과	2,714	1,378	1,336	-	1,336	51	43	45
토지정보과	5,150	764	4,386	-	4,386	15	5	35
교통행정과	5,778	2,562	3,216	54	3,162	44	40	37

▶ 최근 3년간 세입에 대한 징수율 분석

부서명	세목명	2016	2015	2014
재무과	변상금 및 위약금	64%	68%	57%
	지난연도수입	14%	1%	3%
세무1과	보통세	99%	99%	99%
	지난연도수입	15%	13%	16%
세무2과	지난연도수입	21%	22%	19%
주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8%	43%	44%
토지정보과	과징금 및 과태료	65%	3%	59%
	지난연도수입	0%	0%	0%
교통행정과	과태료	57%	54%	47%
	지난연도수입	7%	6%	6%

지난연도수입은 지난연도에 미수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결손처리 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에 가산금 등을 가산하여 징수 결정한 금액으로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2과의 지난연도수입은 보통세 미수납액의 이월분이며, 세무1과의 지난연도수입은 재무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및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이월분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결정한 금액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세입명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불법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변상금, 토지개발에 따른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부담금, 버스전용차선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서 주로 징벌적 성격으로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사용료는 당해연도 6월~7월에 1년치를 부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다음해 3월 실태조사후 전년도 해당액을 부과함으로써 후불개념이므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으며, 부과 시기에 따른 변동사항(공시지가 증감)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변동분 관리에 누락을 방지하고, 상시로 실태조사를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불법행위로 부과된 금액이 고의 체납, 재산 은닉, 납세 태만 등으로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 규범 준수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는 타 구민에게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 독촉안내문, SNS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납부독려
⊙ 체납자의 재산조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직원별 1:1 책임 징수제 실시
⊙ 사용 프로그램이 다른 부서의 상호협조체계 구축
⊙ 징수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및 표창 등의 보상체계 마련 등 체납대비 징수율이 증가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결손금액에 대한 사유별 분석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구 분	합 계	무 재 산	행 방 불 명	시 효 소 멸	기 타
2016	보 통 세	3	3	-	-	-
	지난년도수입(A)	611	521	-	21	69
	지난연도수입(B)	1,014	-	-	1,014	-
	소 계	1,628	524	-	1,035	69
2015	보 통 세	-	-	-	-	-
	지난년도수입(A)	1,296	118	-	13	1,165
	지난연도수입(B)	1,093	-	-	1,093	-
	소 계	2,389	118	-	1,106	1,165
2014	보 통 세	-	-	-	-	-
	지난년도수입(A)	245	28	-	6	211
	지난연도수입(B)	278	10	-	267	1
	소 계	523	38	-	273	212

상기의 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2016년과 2015년에 결손처리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리한 시효소멸금액이 상당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분석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구 분	합 계	무 재 산	행 방 불 명	납 세 태 만	소송계류등	기 타
2016년	지 방 세	3,261	209	14	2	3,036	-
	세 외 수 입	31,873	3,857	864	2,496	18,502	6,154
2015년	지 방 세	3,676	333	5	4	3,334	-
	세 외 수 입	33,060	8,382	97	3,617	19,852	1,112
2014년	지 방 세	4,826	491	-	3,557	778	-
	세 외 수 입	31,576	3,034	1,476	3,190	22,496	1,380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산일(통상 독촉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체납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전 체납자의 행방,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3. 세입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검토

▶ 최근 3년간 예산대비 수입액 및 징수결정액 비율 추이

부 서 명	(A) 실제수입액 / 예산액			(B) 징수결정액/예산액		
	2016년	2015년	2014년	2016년	2015년	2014년
재 무 과	142%	71%	210%	183%	90%	219%
주 택 과	58%	76%	95%	114%	178%	212%
토 지 정 보 과	63%	15%	979%	425%	311%	2,761%
건 설 관 리 과	84%	81%	65%	90%	86%	69%
교 통 행 정 과	97%	108%	95%	219%	270%	252%

종로구청내 25개 부서별로 예산 편성의 합리성 여부를 보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입액 비율(A)와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B)을 검토한 결과,
비율A와 비율B가 80%~120%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기의 5개 부서에 대하여는 주요 세입별로 최근 3년의 세입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입액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2016년 세입예산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비율A 〈 80% 인 경우(주택과, 토지정보과, 건설관리과)는 세입예산을 과대 편성
- 비율A 〉 120% 인 경우(재무과)는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
- 비율 A와 비율 B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주택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와,
- 비율A와 비율B의 추이가 일관성이 없이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우(재무과, 토지정보과)등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시 정교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최근 세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추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재 무 과	이 자 수 입	777	1,082	1,082	772	1,074	1,074	677	948	948
	재 산 매 각 수 입	1,849	2,490	2,490	5,000	2,704	2,669	11,200	23,167	23,167
	지 난 년 도 수 입	10	1,393	198	40	1,112	8	53	1,006	35
주 택 과	과징금,이행강제금	2176	2,501	1188	2341	4,156	1767	1901	4,067	1802
토지정보과	일 반 부 담 금	1045	624	624	1800	1	1	100	2214	2214
	과징금및 과태료	22	109	71	24	1,971	51	50	157	93
	지 난 연 도 수 입	-	4,346	-	-	4,312	-	-	4,309	0
건설관리과	도 로 사 용 료	4,741	5,047	4,866	4,671	4,927	4,771	4,511	4,886	4,738
	변상금및 위약금	2413	1241	929	2863	720	447	2777	(580)	(876)
교 통 행 정	과 태 료	557	1,196	685	498	1,243	666	399	1,196	568
	지 난 년 도 수 입	312	2,899	194	220	3,379	195	414	3,474	219
청 소 행 정	기 타 수 수 료	246	-	-	260	-	-	182	-	-
	기 타 수 입	10	594	592	11	109	109	626	739	607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액,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재무과의 지난연도 수입, 청소행정과의 기타수입, 토지정보과의 과징금 및 과태료,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수입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예산액이 실제수입액보다 낮게 보수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실제로 징수율 또한 상당히 낮습니다.
주택과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토지정보과의 일반 부담금, 건설관리과의 변상금 및 위약금등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실제 수납액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높게 편성되어(30% ~ 80%) 세입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과의 재산매각수입, 토지정보과의 일반부담금 및 지난연도 수입, 건설관리과의 변상금 및 위약금등은 매년 예산대비 징수액(=수납액) 비율이 주기적으로 큰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이는 세원성격상 예측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세입예산의 편성에 정교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건설관리과의 변상금 및 위약금의 예산편성시 과거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고려하는 바, 과거의 과오납 등으로 인한 반환액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입이 분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세목(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세입처리하여 정확한 세입현황을 파악하는데 곤란하므로 다음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각각의 성격에 맞는 세목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보조금 집행사업(복지분야) 세입예산 편성 적절 여부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내역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집행잔액	잔액/수납액
여성복지과	아동급식 지원	456	387	98	25%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위탁)	739	739	120	16%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보상금)	85	85	27	32%
	저소득층 주거급여	63	63	38	60%
복지지원과	취약계층 지원_긴급복지	380	380	134	35%

여성 및 노인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 복지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부서의 주요 보조금 사업을 검토한 결과 몇몇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수혜 대상자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수시로 보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반납등으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시정 및 권고사항

세입예산 추계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종로구 다수의 사업등을 분석한 결과 과거연도의 결산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시계열에 의한 추계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의 환류 측면이나,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볼때는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보수적인 예산편성으로 세수확보 노력이나 신규 세원 발굴에 소극적일수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이 곤란하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징수실적 외에도 최근 및 미래의 경제동향, 징수목표, 편성연도의 특수상황, 과표현실화 계획, 과세물건 증감추이 등 현실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능동적인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 공유재산 임대수익, 사용료, 수수료의 지속적인 원가분석등을 통하여 수입의 현실화 검토
⊙ 신규 세외세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및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수요 증가, 조세저항 심화등의 다변하는 환경등을 고려할 때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단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보조사업 편성시 전년도 기준이 아닌 과거부터 미래까지
추계를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외부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과 같이 복지수요 파악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2 주차장 특별회계

1. 세입 징수율 저조에 따른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 요약표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2016년	56,208	79,021	57,481	21,540	73%
2015년	51,401	81,347	57,904	23,443	71%
2014년	47,254	71,283	47,819	23,464	67%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태료	6,427	4,723	1,704	7,849	4,070	3,779	8,576	4,571	4,005
지난연도수입	21,974	2,138	19,836	21,885	2,221	19,664	21,662	2,204	19,458

최근 3년간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은 1,42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오히려 65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상반기 이전까지 수년간 현년도 과태료 수입금액을 e-호조상에 입력시 이중 입력을 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과년도의 과태료 수입금액은 징수결정액이 과대 계상되었으며 이는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지난연도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실제수입액/징수결정액	73%	71%	67%
사업수입	100%	100%	100%
과태료	73%	52%	53%
지난연도수입	10%	10%	10%

2016년 상반기중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여 2016년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오류 금액을 제거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결손처리액 및 이월액

▶ 최근 3년간 결손처리 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결손처리액	시효소멸	다음연도이월액	납세태만
2016년	516	516	21,024	21,024
2015년	205	205	23,237	23,237
2014년	237	237	23,227	23,227

결손처리 금액은 전년대비 31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21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년도 과태료를 e-호조에 이중으로 입력하는 오류를 수정하여 오류금액이 제거된 데에 기인합니다.

3. 지난연도 세입 분석

▶ 현황 및 실태

당해 세입결산서상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전기 결산서상 미수납액중 결손처리 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5년	2014년
당기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A)	21,974	21,885	21,662
전기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B)	23,237	23,227	22,045
차이금액 (C=A-B)	△1,263	△1,342	△383

상기의 차이금액(C)은 정상적 처리를 하였을 경우 전년도 이월된 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나와야 하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e-호조에 입력시 이중 입력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중 현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2016년	2015년	2014년
e호조시스템 결산상 징수결정액(A)	6,426	7,849	8,576
교통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부과금액(B)	6,531	5,774	6,381
차이금액 (C=A-B)	△104	2,075	2,194

차이금액(C)를 고려하여 수정하였을 경우 차이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된 과태료 미수납액 대비 가산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당기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A)	21,974	21,885	21,662
전기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B)	21,162	21,033	20,995
차이금액 (C=A-B)	812	852	667

4.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관련 시정 및 권고사항

2016년 상반기 이전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시 무인카메라, 주차단속원에 의한 적발로 과태료 부과시 수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년간 현년도 과태료 수입금액을 e호조상에 입력시 이중계상을 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과거 수년간 현년도 과태료 수입 및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이 과대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을 보고하였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부 등이 이루어지고, 과태료 수입의 결산은 e-호조시스템 세입징수 보고서에 의해 징수결정이 진행되는 바, 보다 정확한 대사를 통해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정확한 징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 독촉안내문 및 모바일 메시지로 부과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납부독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등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처분 강화
⦿ 관련부서간 체납자 관리 협조 체계 구축
⦿ 징수율에 따른 인센티브, 표창 등의 보상체계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중등록 등의 징수 불가능한 허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세 출 부 분

1 일반회계 세출관련 집행잔액 과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증감액	35,696,711	30,452,461	2,481,404	2,762,846
2016	381,558,436	322,390,622	32,161,235	27,006,579
2015	345,861,725	291,938,161	29,679,831	24,243,733

2016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9,680백만원을 포함한 381,558백만원이며, 실제 지출한 금액은 322,390백만원입니다. 총 세출액의 부문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책사업으로 210,747백만원(65.3%), 행정운영경비로 98,981백만원(30.7%), 재무활동으로 12,663백만원(4%)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집행액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32,16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006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2,481백만원(8.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2,072백만원(11.4%)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집행잔액 27,006백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3,060백만원을 제외한 23,946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며 추경예산 재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대비 약 7.08% 수준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7,006	2,956	2,310	18,680	3,060	0

▶ 부서별 집행잔액의 과다 지적사례

1) 기획예산과 배상금 과다 편성 사례

공익사업 시행시 철거민 이주대책 및 SH공사의 아파트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사행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대규모 집단 반환소송」이 제기되었고, 2011년 6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거 반환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시·구간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종로구는 3개 사업지구에 대해 반환의무를 결정하고 상기 판결소송금 지급명목으로 미협의 사업체를 포함한 21개 사업, 27개 소송, 309명 배상하는 것으로 2015년 추경예산 편성시 1,415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1,245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당초 예상한 소송판결금을 3개 사업, 6개 소송, 13명의 배상으로 소송금액을 재산정하여 2017회계연도로 376백만원만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869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1,415백만원중 실제 배상금으로 집행한 금액은 없으며, 2017년 사고이월한 금액은 3개 사업에 대해 전부 패소한다고 가정해도 2015년 당시 추경 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배상금이 책정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에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869백만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업무 배상금 등의 책정시 총체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총무과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전년대비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검토한 결과 2015년 인건비 집행잔액은 4,249백만원에서 2016년 5,87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2백만원, 38.1% 증가하였습니다.

⊙ 2016회계연도 인력운영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인건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2016년	79,591,311	73,719,583	5,871,728	7.37
2015년	76,892,415	72,642,910	4,249,504	5.53

상기 집행잔액은 2016년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종로구 순세계잉여금 28,374백만원의 약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2016년 출산휴가 및 장기휴가자가 증가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산정 인원보다 줄어들어 집행액이 감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불특정한 사유 등으로 인건비 예산편성이 매우 복잡함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큰폭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라고 사료되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인건비가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3) 여성가족과 사회수혜적 보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여성가족과의 저소득층 아동급식 보조금은 서울시와 해당 구에서 50%씩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복지환경국의 유사한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집행잔액 비율을 비교했을 때 아동급식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더 많았습니다. 유사사업의 부서별 사회수혜적 보상금 집행잔액과 비교해보면,

(단위: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잔액(%)
복지지원과	기 초 연 금	25,691,708	25,297,695	394,013	1.5
사회복지과	생 계 급 여	10,649,024	10,582,619	66,405	0.62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지원	2,595,572	2,513,462	82,110	3.16
여성가족과	아 동 급 식 비	797,019	536,560	260,459	32.68

여성가족과는 상기 원인이 2016년에 교육부에서 급식비의 인상등으로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배분받아 생긴 차이로 설명하고 있으나 아동급식 예산은 매월 비슷한 금액의 수준으로 집행되는 경상적 경비로 향후 예산 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 종로구 아동급식 대상 수, 학교의 신설등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사업구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 상에는 조석식 급식비, 방학중 급식비 및 학기 중 주말 공휴일 중식비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 지출하는 항목은 '집밥프로젝트', '꿈나무카드' 및 '단체급식비'로 지급되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확인이 곤란합니다. 실제 집행되는 사업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집행시 사업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방보조금사업 관리철저

▶ 지방보조금 현황

2016년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총 2회의 지방보조금의 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93개 단체에 총 1,080백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주요 지원을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사업에 260백만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60백만원 및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102백만원과 매년 지원하고 있는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108백만원을 제외한 순수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은 52개 사업, 550백만원이며 주로 문화관광국 관련한 사업입니다.

1) 지방보조금 신청(편성) 및 집행시 시정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철저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보조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의·성실한 단체등을 선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된 보조금이 당초 신청계획서에 따라 집행되고 적격한 증빙자료를 갖추었으며 불요불급한 집행금액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 정산·반납을 철저히 하는 등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입니다.

⊙ 동일 사업자에게 다수 행사 위탁 지양

보조사업자의 선정 시 동일한 단체(사업자)에게 복수의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1단체 1사업 보조금 단수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별로 통합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부서의 보조금사업을 신청하여 특혜를 받지 않도록 심의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종로구의 특성상 문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지역별 연차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의 2개의 문화특구(인사동과 대학로)에 대해 격년으로 좀 더 크게 사업성 보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과 지역별 보조금 사업현황】

지역명	행사명	지역명	행사명
인사동 문화지구	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대학로문화지구	아시테지 국제겨울축제
	인사동홍보관 전통의상체험		마로니에 예술시장
	토요 문화나눔 한마당		마로니에 시축제
	달빛 한옥음악회		서울연극제
	인사전통문화축제		D,FESTA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궁중의상 및 한복 퍼레이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돈화문로	국악로 국악 축제		달려라 어린이극장
평창동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마로니에 예술마당
교남동	2016 봉숭아축제		SUAF 대학로문화축제
북촌	사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		굿스트릿 마로니에
광화문광장 외	생생문화제		종로 우수연극전
세종마을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	서울 문묘와 성균관	살아있는 향교만들기 사업
	윤동주문화제	종로 전역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세종대왕 탄신 619돌 축하연	광화문광장	2016 종로한복축제

※ 보조금 심의위원회 미심의 사업 포함

2) 동일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과목 통일 권고

종로문화재단은 2016년에 진행한 사업 중 고고종로문화페스티벌(한복축제) 개최시 총 예산 250백만원 중 시비보조금으로 200백만원, 구비 50백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구비는 출연금으로 동일사업에 대해 2개의 예산과목을 사용하여 시비보조금 교부금 부분만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교부액 전부 행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예산과목의 성격이 다르다보니 정산보고 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동일한 보조사업으로 보고 예산과목을 일치시켜 사후 정산보고 받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종로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의 사업 보조금 교부시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금의 활용방안 검토 및 권고사항

종로구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2016년말 현재 조성된 총 기금잔액은 총 97,037백만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현재 기금조성단계로 사업추진실적은 없으며,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소진되어 추가기금출연이 없는 한 현재 기금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6년 종로구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원인자부담액으로 972백만원을 조성하여 700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매년 일정하지는 않으나 원인자부담 조성액 대비 매칭원가에서 약 28%의 복구기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 관리부서인 도로과는 「2016년에는 옥인6가길의 도로정비」를 실시하는 등 도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중입니다. 단발성 정비계획 외에 지역민원을 반영한 중·장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되어 2015년까지 옥외간판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명륜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133백만원이 집행되는 등 기금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될 것이 기대되는 기금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4 기타 검토의견 및 권고사항

1) 공유재산 잔액 불일치 조정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상 공유재산 현황과 결산검사 첨부서류인 공유재산 보고서의 현황이 불일치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공유재산 금액이 부기되는 회계 프로그램(e-호조)의 시스템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도 결산검사시 토지의 경우 차이액은

11,575백만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차액이 16,20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차이가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재무제표상 토지가액	결산서상 토지가액	차 액
2016	2,537,056,020	2,520,846,445	16,209,575
2015	2,535,433,411	2,523,858,152	11,575,259

공유재산과 관련한 두 시스템의 차이에 대한 지적은 2013년부터 꾸준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인 재무과(재산관리팀)는 2016년에 토지정보과로부터 종로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내역을 협조받아 새올시스템에 누락없이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 도입 이전부터 보유하던 공유재산 입력시 역사적 취득원가를 추적하지 않고 당해시점의 기준시가로 입력함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새올행정시스템상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과 e-호조 상의 금액을 일치시켜 향후 토지,건물등의 취득, 매각시 금액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치가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재무과(재산관리팀)는 2016년에 종로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프로그램에 누락없이 입력하였다고 하니 재무과 재산관리팀과 지출팀 회계처리 검증 담당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기준으로 e호조와 대사하여 종로구 공유재산의 오류·누락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유재산프로그램의 취득가액과 e호조 시스템상 취득가액을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2)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상의 위탁사업 수입과 종로구청의 수입금액의 차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종로구 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민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체로 종로구의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대행하고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대행수납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종로구간 내부거래 금액에 오류가 확인되어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2016년 12월 31일 부과분이 다음연도 1월에 수납이 될 경우 2016년 귀속분으로 처리하나, 종로구는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2016년도 세입처리된 현금 귀속분만 세입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차이로 설명하였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12월 31일 카드결제 분의 입금시점까지의 차이 발생을 대행수입금액으로 보고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주차대행 수입금액은 5,005백만원이고, 2016년 주차장 특별회계에 징수 결정된 주차요금 수입액은 5,159백만원입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종로구청의 세입인식 기준의 차이로 인한 금액은 22백만원입니다. 동 인식 차이를 고려하고도 132백만원의 징수차이가 발견되어 확인한 결과 이는 방송통신대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귀속되는 주차수입에 대하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인력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청구한 금액이 종로구 결산서상 주차수입액에 포함됨으로 인한 차이임을 확인였는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예수금 인식시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로구청의 결산 시 회계기간 말에 걸려있는 거래를 고려하여 익년 1월 20일 출납정리 완료시까지 현재 동 대행료에 대한 세입인식의 차이로 인한 부분이 조정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치시켜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서 상에 주차수입에 포함된 대행기관 용역비 청구액은 주차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등,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내부거래 금액을 서로 대사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 귀속연도 오류 사항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환경미화원 인건비)등의 집행잔액은 2016회계연도 귀속되어야할 인건비로써, 출납폐쇄기한(12.31.)까지 집행하지 못할것이 예상되었다면 집행금액을 2017년도로 사고이월 시켜 집행하여야 하였으나, 사고이월하지 않고 2017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2017년도 예산 집행에 부담을 야기시키는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청소행정과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등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회계연도 마감시 인건비 등 귀속연도 구분에 철저를 기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4)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후속조치 권고

결산검사의 주 목적은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수범사례 등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관리를 위함으로 최근 3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석하면 유사한 사례가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수정이나 개선사항은 미비합니다. 이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로 사료되는 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답변 자료를 요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